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447
----------	-------

발의연월일 : 2025. 12. 19.

발의자 : 윤호중 · 최혁진 · 이학영

김원이 · 소병훈 · 김영배

양부남 · 박정현 · 송재봉

이광희 · 김우영 · 이해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에 대해서는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정해두고 그 한도 또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어 공익법인 기부 활성화의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의결권 제한 범위에 상응하는 한도 내에서 출연받은 주식의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상향하되, 특수관계 없는 여타 공익법인 또는 단체에 배분해야 하는 의무지출금도 함께 늘려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기부 확대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기업과 시민사회가 상생하는 공익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및 제48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2호가목 중 “나목 또는 다목”을 “나목 또는 마목”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자선·장학 또는 사회복지를”을 “「공익신탁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을”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종전의 나목) 중 “공익법인등”을 “경우로서 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으로 한다.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마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에 출연하는 경우: 100분의 30

- 1)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
- 2) 「공익신탁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을 목적으로 할 것
- 3) 제48조제2항제7호에 따른 기준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할 것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마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에 출연하는 경우: 100분의 15

1)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만 행사할 것

2) 제48조제2항제7호에 따른 기준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8호”를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를 “(같은 호 나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인등(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로, “같은 목 1)”을 “같은 호 가목1) 또는 나목1)”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6조제2항제2호가목”을 “제16조제2항제2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16조제2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인등(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같은 호 나목3) 또는 다목2)를 위반하여 출연을 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6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인등(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같은 목 1)을 위반하여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나목 또는 다
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
은 제외한다)에 출연하는
경우: 100분의 20
1) (생 략)
2) 자선 · 장학 또는 사회
복지를 목적으로 할 것

<신 설>

가. -----
-----나목 또는 마
목-----

1) (현행과 같음)
2) 「공익신탁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사업을--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마목에 해당하
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
다)에 출연하는 경우: 100
분의 30
1)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
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
2) 「공익신탁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사업을
목적으로 할 것
3) 제48조제2항제7호에 따
른 기준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
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출연자와 특수

<신 설>

관계에 있지 아니한 다
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
할 것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마목에 해당하
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
다)에 출연하는 경우: 100
분의 15

1)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
결권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2호 각 목
의 사항에 대하여만 행
사할 것

2) 제48조제2항제7호에 따
른 기준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
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출연자와 특수
관계에 있지 아니한 다
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
할 것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

라. -----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 5. (생략)
 6. 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인등(같은 호 나목 및 다른 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같은 목 1)을 위반하여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공익법인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에 100분의1(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제78조제9항제3호에서 “기준금액”이라

1. ~ 5. (현행과 같음)

6. -----

(같은 호 나목 또는 마
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호 나목
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
는 공익법인등(같은 호 마목
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
외한다)---같은 호 가목1) 또
는 나목1)-----

한다)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
목적사업(「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거나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
한다)에 사용한 경우

가. · 나. (생 략)

<신 설>

<신 설>

8. (생 략)

③ ~ ⑯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8. 제16조제2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
족하는 공익법인등(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
은 제외한다)이 같은 호 나목
3) 또는 다목2)를 위반하여
출연을 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6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
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
익법인등(같은 호 마목에 해
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
다)이 같은 목 1)을 위반하여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10. (현행 제8호와 같음)

③ ~ ⑯ (현행과 같음)